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35976 판결 [압류등기말소]

전 문

원고A

피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신봉철

변론 종결2024. 9. 11.

판결 선고2024. 10. 16.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9. 25. 접수 제6219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22.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9. 25. 접수 제62199호로 '권리자 국, 처분청 서울지방철도청' 명의의 압류 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국유지 무단 점용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원고가 미납함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체납처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체납처분(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터잡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한 원인 무효의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유효한 체납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아도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되는 유효한 체납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인무효인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주옥

별지